

제12강 수입통관 절차

강 의 : 관세청 정재완 박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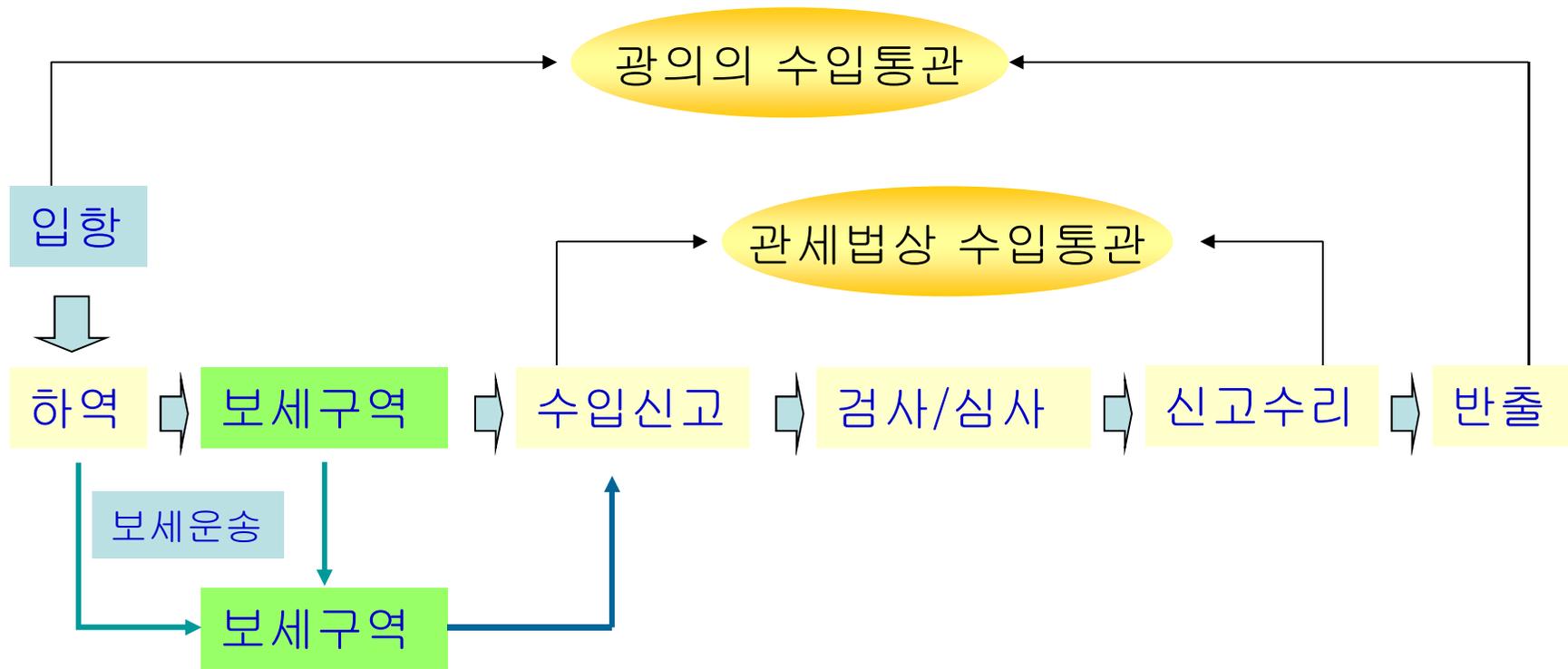


<주요 강의내용>

1. 수입통관절차의 개요
2. 수입신고의 시기
3. 수입신고인
4. 수입신고의 방법과 효과
5. 세관의 현품검사
6. 심사
7. 심사의 종류
8. 검사 및 심사결과의 조치
9.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
10. 여행자휴대품의 통관

국세공무원교육원

1. 수입통관절차의 개요



2. 수입신고의 시기

- 원칙 :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가능
 - 통상 입항후 하역작업을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에 신고
 - 하역작업 후 보세운송을 통해 내륙지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신고

- 예외 : 입항전수입신고제도
 - 출항전 신고
 - 입항전 신고
 -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

3. 수입신고인

원 칙

물품을 수입한 화주



관세사, 관세사법인, 통관취급법인

예외 : 위탁

4. 수입신고의 방법과 효과

- 수입통관전산시스템(CEDIM : Customs EDI for Import)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전송
 - 단, 검사대상물품이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종이서류를 별도로 제출

- 수입신고 단위는 B/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이 원칙
 - 예외적으로 B/L의 분할 또는 통합신고도 가능

- 수입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수입신고 자료가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
- 수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과세물건과 적용법령도 확정

5. 세관의 현품검사

- **현품검사**란 수입신고된 물품과 현품의 일치여부, 신고된 물품 이외에 관세포탈이나 법적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숨겨진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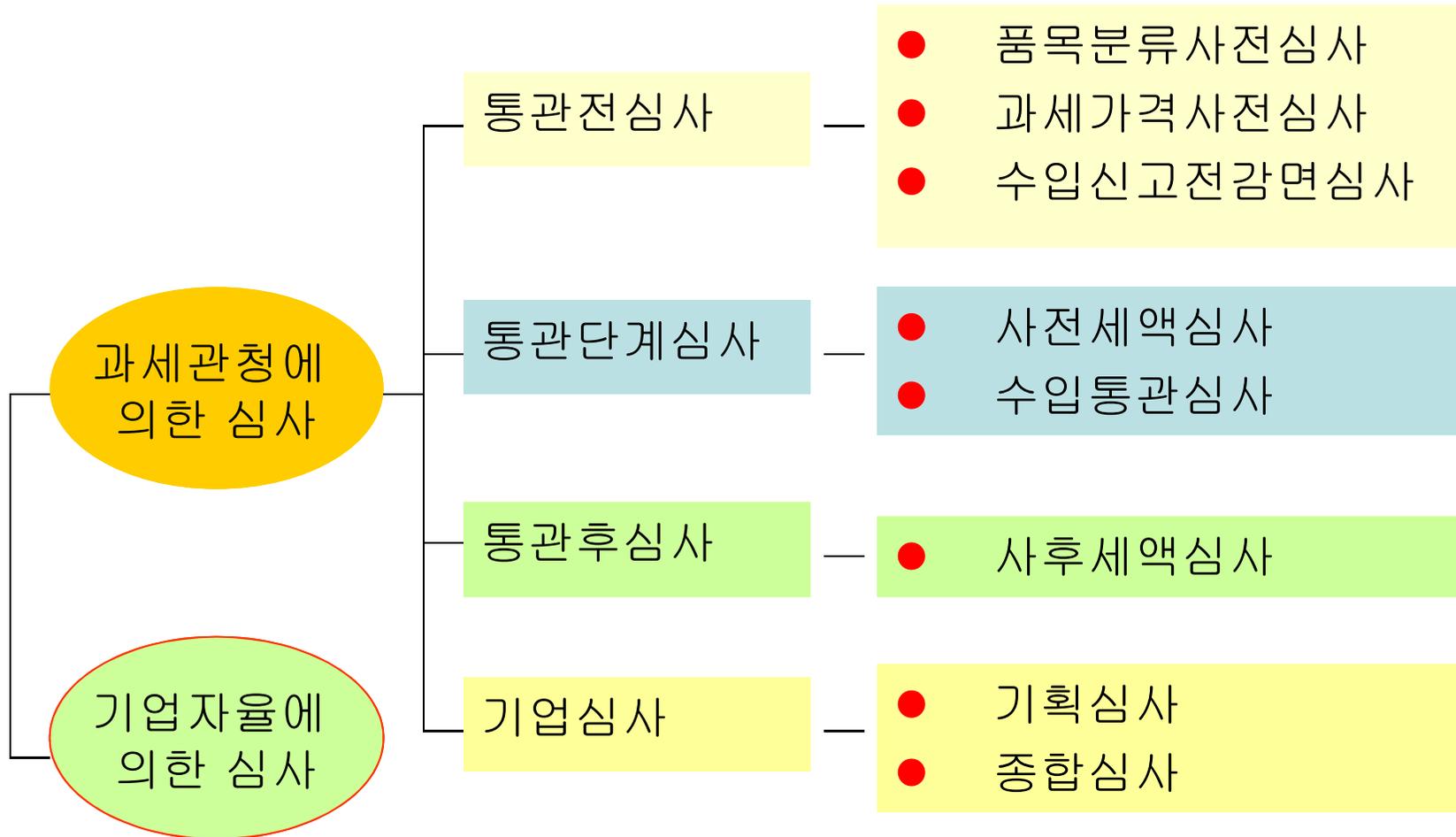
- 검사대상의 결정 : 세관장은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
 - 단,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해 법규 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 생략

- 검사의 실시 : 현품검사는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실시함이 원칙
 - 만일 지정정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당해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이 출장하여 검사하는 **파출검사** 실시

6. 심 사

- **심사의 개념** : 수입자가 신고 또는 신고납부 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와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와 기타 자료를 검토하는 것
- **심사의 종류** : 심사는 이를 행하는 주체와 시기, 내용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
- **심사방법** :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서면심사와, 납세의무자 소재지에 출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실지심사의 두 가지를 병행

7. 심사의 종류



8. 검사 및 심사결과의 조치

- 검사와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 세관장은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
- 이상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
 - 경미한 사항 :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수정한 다음 처리
 - 범칙혐의 발견 등 중대한 사항 :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조치

9.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

□ **개 념** :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을 허용하는 제도

➤ **대 상**

- ① 완제품 세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미조립, 분할선적 수입물품
- ②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
- ③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

10. 여행자휴대품의 통관

- 여행자 휴대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입국장의 현장에서 과세조치하고 통관함이 원칙
 - 간이세율 적용
 - 단, 수입제한 물품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

- 여행자 휴대품 가운데 면세대상은 별도의 통관절차를 요하지 않고 통관 가능
 - 여행자가 입국장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통관절차가 종료